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 제2026-47호

2026년 7월 14일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개선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8월 11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개선권고 재결공고[동해해심 제2026-007호(어선 삼진호 · 어선 강동2호 충돌사건)]

사 건 명 : 어선 삼진호 · 어선 강동2호 충돌사건

피요청자 : 장**(***** ** *****)

강***** ** * ** * ** *

귀하가 선장으로 승선 중이던 삼진호는 2025. 7. 23. 03:27경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사천진항 북방파제 끝단으로부터 방위 약 028도, 거리 약 1.15해리 해상(북위 37도 51분 04초, 동경 128도 53분 28초)에서 강동2호와 충돌하였습니다.

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야간에 삼진호가 전방 경계를 소홀히 한 채 빠른 속력으로 항행하다 정선하여 조업 중이던 강동2호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강동2호가 조업 중 주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협력 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귀하는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선박 조종 시 ① 항상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② 다른 선박과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효과적인 동작을 취할 수 있는 안전한 속력으로 항상 항행하여야 하며, ③ 특히, 자선의 구조 및 운항 특성을 고려하여 전방 경계가 가능토록 수단을 확보해야 하며, ④ 항행 중 주변에 조종불능선, 조종제한선, 어로에 종사 중인 선박, 범선 등이 있는지 유심히 살펴 그러한 선박의 진로를 피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여 항법에 따라 각별히 주의하여 항행하는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귀하에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 사항에 대하여 개선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건 명 : 어선 삼진호 · 어선 강동2호 충돌사건

피요청자 : 박** (***** ** *****)

강***** *** ** ***** ****

귀하가 선장으로 승선 중이던 강동2호는 2025. 7. 23. 03:27경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사천진항 북방파제 끝단으로부터 방위 약 028도, 거리 약 1.15해리 해상(북위 37도 51분 04초, 동경 128도 53분 28초)에서 삼진호와 충돌하였습니다.

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야간에 삼진호가 전방 경계를 소홀히 한 채 빠른 속력으로 항행하다 정선하여 조업 중이던 강동2호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강동2호가 조업 중 주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협력 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귀하는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어로 작업 중에도 ① 주변에 자선을 향해 오는 선박이 있는지 경계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② 그러한 선박이 있다면, 주의 환기 신호를 보내는 등 조기에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협력 동작을 취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여 항법에 따라 각별히 주의하여 조업하는 등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귀하에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 사항에 대하여 개선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